

0010



建設業受注統計調査 指針書

1987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052183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3
4. 조사범위	4
5. 조사대상처	4
6. 조사항목(사항)	4
II.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5
1. 주의사항	5
2. 기입요령	5
III. 조사원 유의사항	9
1. 실 사	9
2. 유고사업체 처리	11
3. 조사표의 검토	12
〈부록〉	
1. 발주자별 분류해설	15
2. 공종별 분류해설	21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건설업수주 통계조사는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중 건설부장관 고시 도급한도액 순위상 대규모 순서로 170 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의 건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종별 및 발주자별로 조사 집계함으로써 건설활동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사결과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의 생산활동, 고용 및 건설자재 수급 등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조사는 경기예고지표 구성제열의 하나를 이루는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은 민간발주의 기계 수주 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반영하는 주요경기 선행지표가 된다.

2. 조사연혁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분 결과부터 매월 「건설업 수주동향」 속보에 수록 공표하고 있으며 1976년 7월 26일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1-11-15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3.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서, 각지방 통계사무소장은 전월의 수주액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월 18일까지 중앙에 도착시킨다.

조사방법은 통계요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계식방법을 병행한다.

4.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5, 건설업”으로 정의되는 국내외 건설공사의 수주액으로 원도급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공사는 원칙으로 제외한다. 그러나 하도급받은 경우일지라도 국내 건설업체가 아닌 외국건설업체이거나 혹은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5. 조사대상처

매년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도급한도액 순위상 대규모 순으로 170 개사를 대상처로 하되 면허취소, 폐업, 장기휴업(6개월 이상) 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

(단, 2개의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합병될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6. 조사항목

- (1)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직영공사인 자기공사계획액 포함)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액
- (2) 공종별
- (3) 발주자별

Ⅱ. 조사항목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1. 주의사항

-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4와6, 0과6, 3과8, 7과9·4와9 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 오기된 내용을 정정코자 할 때는 오기된 곳에 두줄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난은 기입하지 않는다.
- 해당되는 공사의 기입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조사표를 사용하여 매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 조사표 뒷면의 문의전화는 각 지방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배부한다.

2. 기입요령

(1) 사업체번호

사업체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따라서 사업체번호 기입을 누락하거나 중복이 안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① 도급공사계약

- 조사대상월중 발주자와 계약체결한 모든 건설공사내역을 공사진별로 기입한다.
- 국내의 타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 수주기준일은 최종계약체결일로 한다.
즉, 응찰중에 있거나 설계작성중 또는 계약체결전의 일부 착공등은 수주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어 아직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기공사계획(또는 착공)내역

- 자기공사라 함은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공사의 경우도 포함한다.
- 자기공사의 수주기준일은 계획이 확정된 때, 즉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계획확정없이 착공하는 경우에는 착공당시를 수주기준일로 하여 우선 대략적인 예정공사액을 보고하여 계획이 확정된 월에 공사액의 증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명 및 세분류공종명

- 공사명은 공종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 공종분류 부호는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에 따라 부호를 기입한다.
-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인 경우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라 함은 군부대(유엔군포함)의 공사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민간등의 건설공사도 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위와 관련된 공사명은 00공사라고만 기입하고, 군인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한다.

④ 발주자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 발주자명은 계약상에 나타난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세분류 발주자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세분류명을 기입한다.
- 조달청장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원발주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기입해서는 안된다.
- 방위와 관련된 공사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입한다. 예컨대 발주처가 군부대인 경우 군부대명 대신 “정부”, 세분류 발주자명도 “정부”로 기입하고, 유엔군이면 “주한외국기관”으로 각각 기입한다.
-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자기공사인 경우는 그 계열회사명을 기입한다.

⑤ 수주액

- 수주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말하나,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공사공급가액에 10%를 가산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급 원자재지급계획액도 포함한다.

- 자기공사인 경우는 자기공사계획확정시(또는 착공시) 그 공사에 소요될 총공사비가 수주액이 된다.
- 발주자가 공사계약체결시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업체에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원자재를 계약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발주자급 원자재 지급계획액란에 기입한다.
- 계약변경과 자기공사의 계획확정 또는 변경등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된 수주액 내역을 공사건별로 조사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증액분앞에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앞에 (-)기호를 붙여 기입한다.

(3) 해외건설공사 수주내역

- ① 해외수주는 계약당시의 외화(\$화로 환산) 및 환율(한국은행집중기준율)을 적용한 원화환산치로 기입하되 외화(미국화로 환산)는 천불, 원화환산치는 백만원 단위로 해당란에 기입한다.
- ② 해외수주는 발주자급원자재 지급계획액을 포함치 않는다.
- ③ 계약변경으로 수주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Ⅲ. 조사담당자의 유의사항

1. 실 사

- (1) 조사담당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이전까지는 조사표기입을 완료해야 한다.
- (2) 규모가 큰 사업체로서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에 면접할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는다.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3)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과의 대비등에 유념해야 한다. 타업체의 조사표와 조사기록부를 휴대방문하였을 때에는 타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4) 조사담당자는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 결과가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 비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사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회수할 때에는 즉석에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종명 및 발주자명이 한글(영문으로 기입되었을 시는 한글로 표기)로 정확히 기입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분류공종명 및 발주자 명은 하단의 세분류공종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보기표를 참조하여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또한 계약일자, 착공, 완공, 예정일자의
누락여부 및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 대상사업체중 해외건설공사 면허를 소지한 대상사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내공사 수주액자료 제공부서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 수주액
자료 제공부서(해외업무부 기획관리실등)도 방문하여 해외건설수주조
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국군부대, 유엔군 등)에 관한 조사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술한 기입방법대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기록부 기록시에도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에 관한 조사사항은 전
술한 기입방법대로 기입하여 보안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조사는 약12,000개 건설업체중 대규모 170개사업체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바, 비록 단 1건의 수주액이라도 누락을 시킬 경우에
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누락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
의하여야 한다.

만일 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거나 익월 조사분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난외에 기입한다.

(6) 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한후
작성한다. (전화조사 엄금)

(7) 조사표의 수주액 내역을 조달청 및 건설협회 자료와 비교 확인한
결과 누락되는 사례가 매월 발생하는 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

(8) 이미 발주한 공사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별의 공사건으
로 하여 일련번호, 공종별, 발주자별 부호를 부여하고 증감액을 기재한
다.

(9) 각 건설업체에서 시공할 자기공사 계획액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한다.

(10)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발주자 분류를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 (자기 사옥을 건축한 경우에는 기타비 제조업)

(11) 수주계약 당시에 발주자급 원자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약액에 포함시킨다.

2.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조사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명칭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조사불응 사업체

-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 과·부장을 방문 협조를 구한다.
-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도 지부에 측면지원을 요청토록 한다.
- 건설협회, 시·도 지부의 중용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불응자, 협회, 중용일자, 기타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2)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물리적인 건설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등 사무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담당자는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에는 조사표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되, 통계사무소장은 중앙에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폐업사업체

대상 사업체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체를 관할 시·도 건설협회지부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전사업체

동일 조사구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동일 사무소(시·도)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역을 담당하는 자에게 신속히 인계하여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중앙에 즉시 보고하여 이전된 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3. 검 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한다.

- (1) 조사기준인 년, 월분이 정확히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사업체번호 기입의 누락 또는 중복이 안되었나 검토한다.

- (2) 모든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가므로 “천원” 단위로 잘못 기입이 되었나 검토한다.
- (3) 공사명과 발주자명이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 및 세분류 발주자명의 보기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는 공종분류를 관공서로 분류하지 말고 사무실로 분류한다.
 - 학교의 체육관·동물사육장등의 공사는 주건물(학교)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 직장 주택조합은 발주자분류를 기타비제조업으로 분류해야 된다.
 -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발주는 「농림·수산」으로 분류한다. (「토지조성」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조합」은 발주자분류를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기타 공공단체가 아님)
- (4) 국내 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이 착오로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 (5)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 원발주자(실수요처)가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잘못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 (6)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공사건으로 하여 공사명등 모든 조사항목을 기재하고 증액시에는 (+)기호를, 감액시에는 (-)기호를 증감액분앞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바 이의 여부를 검토한다.
- (7) 기타 기입사항의 오기, 누락 여부를 재검토한다.

1. 발주자별 분류해설

가. 국내 공공부문 발주

101. 정 부

중앙행정기관(각원,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주재기관(각급 검찰관서, 각급경찰관서, 각급세무관서, 각급관세관서, 각급체신관서, 조달관서, 지방통계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각급군부대, 각급국립학교(국립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등), 각종헌법기관(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정부위원회(사회정화위원회 등), 입법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사법부(대법원, 각급법원 및 지원, 등기소 등)

10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각도 구·시·군, 시·도교육위원회, 구·시·군교육청, 공립학교(사립학교는 민간 비제조업의 금융보험 및 상업 서비스업에 분류), 소방관서 등

103. 국영기업체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책은행 및 국영기업체와 지방공기업중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말한다.

△ 국책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의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 국영기업체 : 농업진흥공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 국영기업체(제조업) : 포항제철주식회사, ^국한우냉장주식회사, 영남화학주
식회사, 한국조폐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진해
화학주식회사, (주) 한주,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동해펄프주식회사 등

104. 기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조
합(농협, 수협, 축협, 농지개량조합), 영조물법인, 각종연구소, 대한적십
자사 등. (단, 다수의 개인이 재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을 건립한 경우에는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관리연구소, 국방품질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관리공
단,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소, 한
국표준연구소, 한구화학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과학재단, 재단법
인한국농촌경제연구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정화국민
운동추진협의회,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갯생보호회, 세계반공연맹사무국, 남북평화통일연구소, 한국어선협
회, 대한체육회,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서울종합지원훈
련원, 대한나협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결핵협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성업공사, 교통안전진흥공단, 국제공항관리공단,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문예진흥원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강남병원,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금촌의료원, 춘천의료원,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금강도선공사, 부산위생주식회사, 대구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인천개발공사, 주식회사경기개발공사, 경북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대전종합개발주식회사 등

나. 국내 민간부문발주

(1) 제조업

211. 음식료품제조업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낙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물기름제조가공, 도정, 제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 얼음제조, 조미료제조업 등

212. 의류제조업

직물, 가방, 편직, 어망, 로푸, 방석, 제사, 방직, 표백, 염색, 비옷, 가죽, 돗자리제조업 및 자수업 등

213. 화학, 석유제조업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플라스틱, 도료, 안료, 의약품, 비누, 향료, 폭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무신, 에보나이트, 화장품제조업 등

214. 철강제조업

제철, 제강, 압연, 주물 기타 비철금속제련업 등

215. 기계제조업

금속제품, 구조물, 장치틀, 베어링, 볼트, 너트, 케이블등의 금속소재, 기계요소, 일반기계, 전기기기, 자전거,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의 수송장비, 과학계측기, 카메라, 기계, 안경등의 정밀기기 제조업 등

216. 기 타

제재, 제지, 신문,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귀금속, 우산, 펄기, 사무용품, 고품품, 시멘트 제조업 등

(2) 비제조업

221. 운수·보관창고업

운수, 창고, 파이프라인운송, 수상운송, 항만시설대여, 항공운수, 보관업 등

22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어비스업

시중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중개, 토지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어비스, 법무, 회계서어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광고, 민영방송, 각종협회(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통계협회 등), 통신소,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등

223. 부동산업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아파트) 건축분양 및 임대 등

224.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취, 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점토, 석

면, 장식, 암석, 석재채취등의 광업

225. 기 타

농림어업, 건설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다. 국내 외국기관

주한외군, 외국상사, 주한외국공관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라. 해 외

외국정부나 민간등에서 발주한 것으로 공사지역이 국내가 아닌 경우

2. 공종별 분류해설

가. 건 축

101. 주 택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군인아파트 포함), 기숙사, 연립주택(산업용과 주거용 혼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의 면적이 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102.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점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육탕, 이·미용실, 방송국, 시장 등

103. 공장, 창고

공장구내 제건물(주택, 기숙사, 병원 제외)
발전소건물, 변전소건물,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등

104.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수족관 등)

후생시설(병원, 보건소, 육아소, 고아원, 양로원, 기타 보호시설 등)

관공서 청사(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관상대 등)

105. 기타 건축

철도(기관차 차고, 정거장 제건물), 부두(보세창고, 영업창고를 제외한 부두 제건물), 공항(격납고를 포함한 공항 제건물)

교정시설(교도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등)

기타(사관학교, 사찰, 교회, 체육관, 박람회 건물, 화장장, 군막사, 우사 등)

나. 토 목

201. 치산, 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제방, 해안침식 대책, 개수공사 등

202. 농림, 수산

농업시설공사, 간척, 개간, 판개, 어항, 양식시설 등

203. 도로, 교량

도로, 교량, 광장, 육교, 고가도로, 지하도 등

204. 항만, 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급유설비, 저탄장, 저목장, 활주로 등

205. 철도, 궤도

철도, 지하철, 철도교량, 레일공사, 침목공사 등

206. 상·하수도

취수, 정수, 배수 등 상수도 설비공사, 측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도 등

207. 발전, 송전, 변전, 배전시설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 송·변전, 옥외배전시설, 전화노선공사 등

208.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택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조경공사 등

209. 댐

댐시설, 취수설비 등

210. 기계설치

각종 기계설치, 기중기설치 등

211. 기타 토목

터널공사, 준설, 색도 등

다. 전문직 공사

300. • 연관난방 (연관, 난방, 환기, 냉방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옥내배수설비, 건조장치, 제빙장치, 기타 배관 등)
- 도장, 도배, 실내장식 (시멘트 뿜어붙이기, 단청공사 등)
 - 전기, 통신 (옥내배선, 조명시설, 옥내전화, 설치공사, 화재경보기설치공사 등)
 - 석공, 미장 (석재가공부착, 부록쌓기, 타일부착 등)
 - 목공 (목공, 마루깔기 등)
 - 지붕잇기, 합석공사
 - 구조강건립 (철골조건설, 철근, 판금, 금속제샷슈, 비상계단공사 등)
 - 방수, 방습, 내화
 - 기타 (유리, 굴정, 해체, 굴뚝설치, 열절연, 집진장치, 온돌, 비계, 창호, 축로, 조원공사, 칸막이, 천정공사 등)
- 단, 건물에 부착된 냉·난방, 환기, 급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분류에 포함시킨다.
- 또한 부속건물 (창고, 차고 등)이나 문따위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류로 분류한다.